

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심의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에서 심의를 해왔는바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의거 폐지되므로 “사하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폐지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“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”에서 심의하고자 함

2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

3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변경(안 제4조의2)
 - 기존 : 사하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
 - 변경 :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
-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삭제
(안 제5조 내지 제8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

-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가 2005. 7. 31부로 폐지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심의와 운용 등 제반사항을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토록 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를 변경조정하고
- 위원회 변경에 따른 기능폐지와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확보와 능률성제고에 기여 한다고 판단되며
- 특히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

위 조례 일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